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가 인정 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사규에 의해 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 예전과는 달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추세이다 보니 집(부동산)의 공동명의뿐 아니라 자동차 등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매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또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당연히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원천세과-502, 2011.08.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1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52, 2006.1.16.)을 참조하시기 바람.

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시내출장이 아닌 장거리 시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시외출장에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실제 시외출장에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46013-575, 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종업원 소유차량의 범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자신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단독의 명의로 아닌 배우자 단독명이나 그 밖에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 자신과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차량을 소지한 직원이라고 누구에게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직원)이 자기소유(본인 단독명)의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④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명의 차량	불 가
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 차량	가 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 가